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57호 2022. 5. 3.(화)</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53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716호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3

거창군 공고 제2022-725호 2022년 제1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뱅크)
채용시험 재공고 7

거창군 공고 제2022-731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재공표 23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84-28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2-716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직권 용도폐지 검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32조의3에 의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 등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거창군수

1. 용도폐지 검토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고
거창읍 대평리 1323-1	도로	200㎡	200㎡	위치도 등 붙임 참고
거창읍 대평리 1323-1	도로	12㎡	12㎡	
거창읍 대평리 1323-1	구거	138㎡	138㎡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2. 5. 3. ~ 2022. 5. 18.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2. 5. 3. ~ 2022. 5. 18.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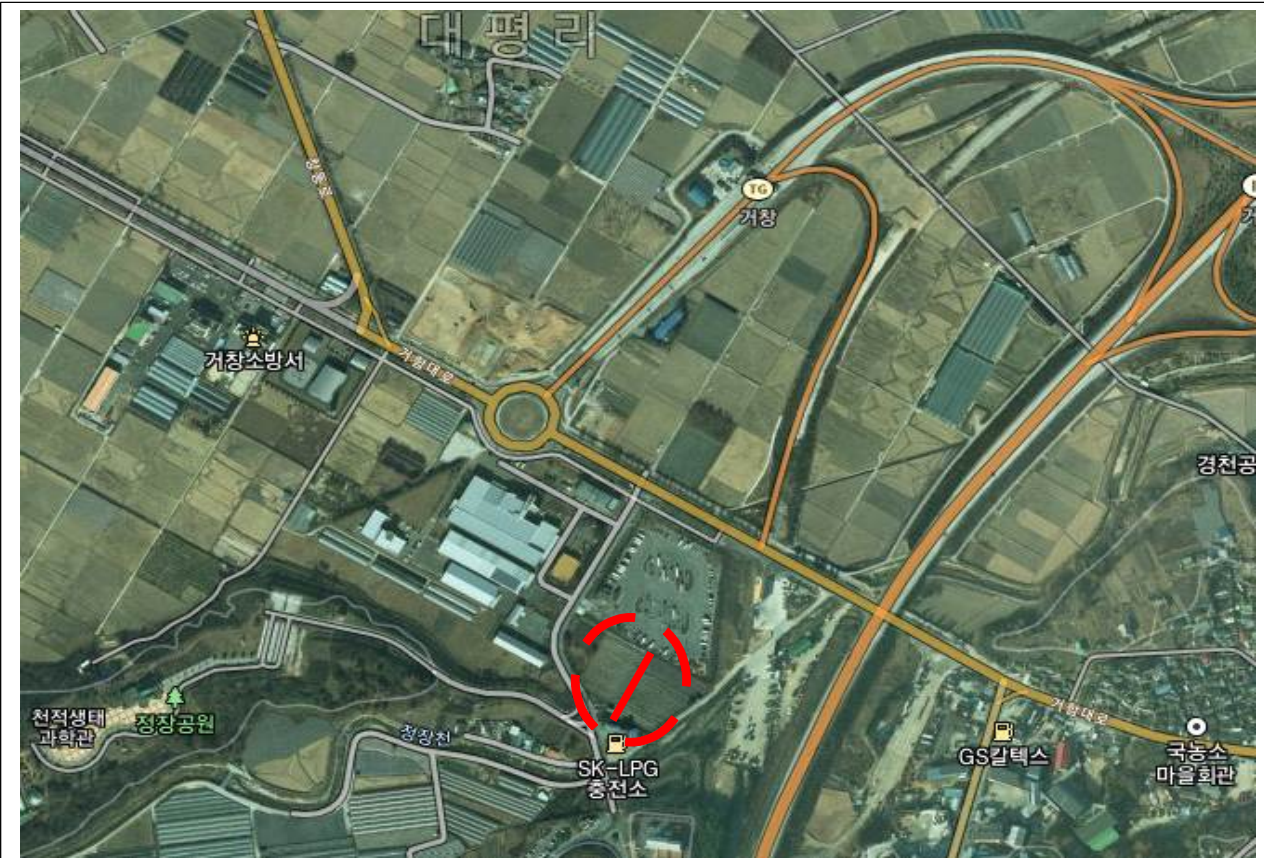
귀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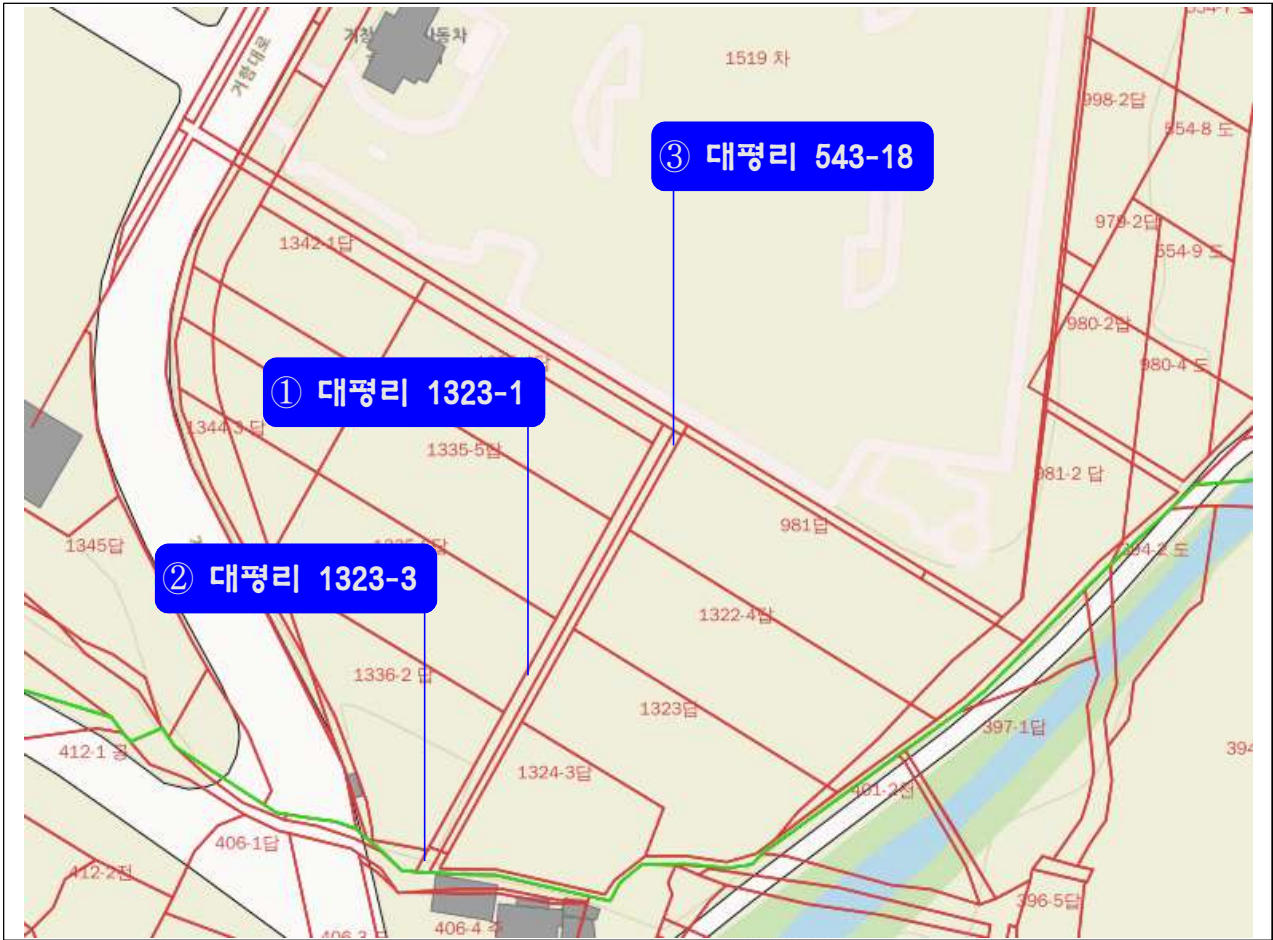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2 지적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상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고
계				3필지	350㎡	
1	거창읍 대평리	1323-1	도로	200㎡	200㎡	
2	〃	1323-3	도로	12㎡	12㎡	
3	〃	543-18	구거	138㎡	138㎡	

**2022년 제1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뱅크) 채용시험 재공고**

2022년도 제1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뱅크)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9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신분	분야	인원	직급	계약기간	채용사유	비고
지방한시 임기제 공무원	일반행정	5명	지방한시 임기제 8호 (주35시간)	1년	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 보충	
	시설 (토목,건축)	5명				
	기록물관리	1명	지방한시 임기제 7호 (주35시간)		기록물연구사 장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 대체인력뱅크란? 】

-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사람은 향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미근무)하며, 임용사유 발생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최대 1년 6월)
 - ※ 선발인원 중 개인별 임용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임용사유 미발생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대체인력뱅크 내 대체인력 정보 보유기간 합격자 발표 기준 2년)
- 대체인력뱅크로 구성된 선발인원은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되더라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지방한시임기제 7호 : 만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한시임기제 8호 : 만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예정일)

임용예정 분야	자 격 요 건
일반행정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 (토목, 건축)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분야 관련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 직무(회계업무, 일반 및 민원행정업무, 시설 등) 수행 경력 * 인정경력 :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야	직 무 내 용
거창군 결원부서	일반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 농촌행정, 주민등록 등 행정 전반 -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시설 (토목, 건축)	○ 시설(토목, 건축) - 시설물 관리, 공사감독 등 시설관리 업무 전반 -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행정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록물 관리 - 기관 기록물 생산·유통·보존 업무 -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야	직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이관(인수), 정리, 등록, 폐기 등 - 기록물 목록정리 및 통계 집계, 문서고 관리 및 운영 - 기록물 관련 업무 전반 및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87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1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5. 보수 수준

구분	급여기준액	근무시간 적용시 급여액
지방한시임기제 7호	2,119,100원	<u>1,854,210원</u>
지방한시임기제 8호	1,888,500원	<u>1,652,430원</u>

※ 보수월액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2. 5. 13. ~ 5. 17.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2. 5. 19.(목)	2022. 5. 25.(수) 거창군청	2022. 5. 27.(금)

-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를 서면 심사(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검정

-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6)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공고 응시자는 1차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 7호 7,000원
 - ▶ 8호 5,000원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필요시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
-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2022년 제1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가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임용 부서		(담당자 기재)		
분야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서식1]	
2	이력서 ▷ [서식2]	
3	자기소개서 ▷ [서식3]	
4	직무수행계획서 ▷ [서식4]	
5	최종학력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자격검증 동의서 ▷ [서식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식6]	
9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는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제 응시자 책임입니다.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기재	응시 분야		성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2. . . 작성자 :					(인)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22. . . 작성자 : (인)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뱅크)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제공표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주민투표법」 제9조 및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제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 서 주민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53,049	53,005	44	5,305	청구권자 총수의 1/10 이상

2022년 5월 3일

거 창 군 수